



##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

[제목개정 2016. 7. 1]

제정일	2008.10. 1
개정일	2016. 7. 1
개정차수	1차
담당부서	행정지원과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법인정관 제20조의 6(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)에 근거하여 개방이사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라 칭한다)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. (개정 2016. 7. 1)

제 2조 (기능) ①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개방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
2. 감사 추천에 관한 사항
- ② 법인으로부터 개방이사 추천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.
- ③ 개방이사의 경우 학교 전학이념에 적합한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.
- ④ 감사의 경우는 개방이사 추천방법을 준용하되, 법인 추천이 있을 시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자로 1배수 추천하여야 한다.

제 3조 (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: 2인
2.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: 3인
- ② 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

제 4조 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.

제 5조 (의장 등의 직무) ① 의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다.

제 6조 (회의) ①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개방이사 및 감사 추천사유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회의를 소집한다.

- ②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7조 (회의록)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

제 8조 (비밀유지) 추천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는 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9조 (간사) ①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- ② 간사는 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10조 (대우) 추천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 (재정) 이 회의 예산은 대학의 예산으로 편성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